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0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안도걸 • 전용기 • 정일영

조인철 • 민형배 • 정동영

김동아 · 위성곤 · 임호선

조정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59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를 각각 "제59조,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6"으로 한다.

제5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6(혼인세액공제) ①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혼인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 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다. 1.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 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 2, 제57조, 제57조의2, 제58 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 제59조의2부터 제5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 9조의4까지 및 제59조의6---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 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 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 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 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 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

7조의2, 제58조, <u>제59조 및</u>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 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생 략)<신 설>

	· <u>제59조,</u>	<u>제59</u>
조의2부터	제59조의4까	지 및
제59조의6-		

3. (현행과 같음)

제59조의6(혼인세액공제) ①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 야 한다.